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폴리어학원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9010006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1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31

주식회사 폴리인스퍼레이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폴리인스퍼레이션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 동 4 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02-2224-7800 FAX : 02-483-7641
<http://www.koreapolyschool.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 1 : 재무제표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04.07.12	2004.07.12	주식회사 폴리인스퍼레이션 사업자등록번호 117-81-51015 법인등록번호 110111-304772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식회사 폴리인스퍼레이션	폴리어학원 외 2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 동 4 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특수관계인 (임원)	김성원(공동대표이사) 장수복(공동대표이사) 임홍일(사내이사) 차경옥(사내이사) 김수정(감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김성원, 장수복	02-2224- 7800	02-483-764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폴리어학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폴리어학원	-
상호	폴리어학원 OO 캠퍼스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서비스표	폴리어학원	서비스표 등록 제 4102681630000 호
	Poly	서비스표 출원 제 4020220176416 호
영업표지	Poly 폴리어학원	-
	Poly 폴리어학원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1,007,806	18,943,304	22,064,502	34,047,736	3,857,595	3,733,457
2023년	60,312,075	38,910,501	21,401,573	37,828,022	3,779,096	1,329,767
2024년	70,920,516	45,268,816	25,651,700	38,868,922	8,042,684	3,244,736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성원	2021.06.23~2024.07.24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4.07.25~2025.03	(주)폴리인스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5.03~현재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장수복	2025.03~현재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임홍일	2019.11.27~2024.07.24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4.07.25~현재	(주)폴리인스퍼레이션 사내이사	경영지원
	차경옥	2024.08~현재	(주)폴리인스퍼레이션 사내이사	경영지원
	김수정	2022.03.31~현재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감사	감사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19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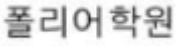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가맹본부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가맹사업 경영	2012.08~현재	엠폴리어학원(등록번호: 20120100407)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폴리인스퍼레이션	가맹사업 경영	2023.04~현재	캔비어학원(등록번호: 20212499)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41 류	2011.02.01 출원 2013.09.09 등록	4120110002960 출원번호 4102681630000 등록번호	(주)폴리인스퍼레이션	2033.09.09
	41 류	2022.09.26 출원	4020220176416 출원번호	(주)폴리인스퍼레이션	출원 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등록되지 않아(출원 상태)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폴리어학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2년 02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9년 12월 1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폴리귀국학생 교육원	폴리스쿨	김성원	1999.12~2002.0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64-3 신일산연합상가 5층
(주)에듀폴리	폴리스쿨	김성원	2002.09~2004.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리브르 오피스텔 308호
(주)코리아 폴리스쿨	폴리어학원	김성원	2004.07~2019.1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주)코리아 폴리스쿨	폴리어학원	임홍일	2019.11~2021.06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주)코리아 폴리스쿨	폴리어학원	임홍일, 김성원	2021.06~2023.07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주)폴리인스 퍼레이션	폴리어학원	임홍일, 김성원	2023.08~2024.07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주)폴리인스 퍼레이션	폴리어학원	김성원	2024.07~2025.0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주)폴리인스 퍼레이션	폴리어학원	김성원, 장수복	2025.03~현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4층(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3. [폴리어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폴리어학원	대분류
교육(외국어)		학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폴리어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51	51	-	59	59	-	61	61	-
서울	16	16	-	17	17	-	17	17	-
부산	3	3	-	5	5	-	5	5	-
대구	2	2	-	3	3	-	3	3	-
인천	3	3	-	3	3	-	3	3	-
광주	1	1	-	1	1	-	2	2	-
대전	2	2	-	2	2	-	2	2	-
울산	-	-	-	1	1	-	1	1	-
세종	1	1	-	1	1	-	1	1	-
경기	15	15	-	17	17	-	17	17	-
강원	-	-	-	-	-	-	1	1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2	2	-	2	2	-	2	2	-
경남	3	3	-	4	4	-	4	4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폴리어학원]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51	4	-	-	-	55
2023년	55	4	-	-	1	59
2024년	59	3	-	1	3	61



6. [폴리어학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폴리어학원] 외에도 [2]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폴리인스 퍼레이션	폴리어학 원	200901 00062	교육 (외국어)	55/-	59/-	61/-
가맹본부	주식회사 폴리인스 퍼레이션	엠폴리어 학원	20100100407	교육 (외국어)	6/-	6/-	5/-
가맹본부	주식회사 폴리인스 퍼레이션	캔비 어학원	20212499	교육 (외국어)	-/1	5/-	7/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매출액	면적 3.3 m ² 당	상한	매출액	면적 3.3 m ² 당	면적 3.3 m ² 당	
전체	61	2,354,714	12,162	6,815,490	30,587	659,430	3,425	58곳 산정
서울	17	2,437,468	12,775	6,815,490	28,191	659,430	3,909	17곳 산정
부산	5	1,459,874	7,609	2,927,370	12,197	794,155	3,425	5곳 산정
대구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17	2,660,274	14,017	4,308,040	30,587	802,340	3,964	16곳 산정
강원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자체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6 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61 개가 아닌 실제 58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폴리어학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폴리어학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61	5,03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당사는 [폴리어학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42,696	-
판촉비	-	연중	182,937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미래채널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02-2151-3996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shinhan.com)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본부명 및 사업자번호 기입 → ⑦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신한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폴리어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A지역	B지역				
가맹금 및 기타비용	225,000~ 264,800	170,000~ 209,800				
가맹금 등	개원 시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110,000	82,500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아래 별표내용 참고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44,000	27,500			소멸성 비용
	초도물품비	44,000	44,000			소멸성 비용
	콘텐츠사용료	22,000	11,000			소멸성 비용
	독서프로그램 도입비	5,000	5,000			소멸성 비용
	개원학기 교재세트(선택)	6,800	6,800			소멸성 비용
	GRAD(초 6~중 3)교육과정 추가비용(선택)	33,000	33,000			소멸성 비용
	최초가맹금에 따른 제공 교육과정	ECP, ELE, GRAD(초 4, 5 학년 한정)				

A 지역: 서울, 경기,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인구 50 만이상의 시



B 지역: 그 외 지역

*위 항목 중 예치가맹금의 대상이 아닌 **초도물품비, 개원학기 교재세트(선택) 및 GRAD(초 6~중 3)교육과정 추가비용(선택)**은 지급 기한 내에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 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제 9 조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지역	B지역
합계	181,000~214,000	126,000~159,000
개원시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110,000	82,5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44,000	27,500
콘텐츠사용료	22,000	11,000
독서프로그램 도입비	5,000	5,000
GRAD(초6~중3)교육과정 추가비용(선택)	33,000	3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66,000	해당 없음	-	실평수 462.812 평방미터 기준 (140 평)
학원 집기, 비품	가맹학원 자율선정	25,000	178.5	가맹본부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구, 전산 사무기기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89,000	635.7		목공, 전기, 페인트, 소방
냉/난방		45,000	321.4		시스템 설비
간판(내부/외부)		4,000	해당 없음		표찰, 썬팅, 간판
광고비		3,000	해당 없음		전단, 현수막
금융 비용		1 주일 경과마다 약 [222] 추가부담		-	직접 지불하는 비용 아님 기업 대출금리 7% 적용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인테리어, 간판 매뉴얼과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로부터 기획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학원사업부 (전화:02-2224-7800)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①해당 사업권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자 ②학원법이 정하는 설립인의 자격요건



		③전용면적 462.812 m ² (140 평)이상의 교육시설, 강의실수 10개 이상, 도서관 상담실 및 원장실 구비, 기타 학원생 교육에 필요한 물적, 인적 조건 구비
종업원(강사)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학원 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를 채용(단, 강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폴리어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당사	아래 표 참고	당월 25 일 까지 (15 일 정산 20 일 청구)	반환안됨	소멸성 비용	1. 관리, 교육, 지도 2. 첫번째 학부모 설명회 후 12 개월차부터 로열티 부과
교육훈련비 (워크숍)	당사	평균 2,700	1 년에 2 회	반환안됨	소멸성 비용	강사의 자질과 능력 향상교육, 신교재 교육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구분	로열티 금액(VAT 포함)	비고
청구 시작 월로부터 60개월 이전까지	교습비의 4.4%	-
이후부터	교습비의 4.95%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나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환경, 매출/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장의 환경 상태 감독,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 년에 1 회~2 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1 년에 2 회~4 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시설기자재, 교재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시설기자재, 교재의 보관상태 등 점검	1 년에 2 회~4 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강사채용 및 관리	적정한 강사의 채용 여부, 관리, 교육 등 점검	1 년에 2 회~4 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경우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의 가맹금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되, 신규 계약 체결 시점에서 통상 적용되는 최초 가맹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의 일부 금액을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폴리어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게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 후 당사로부터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수가맹계약 시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2]]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A지역	B지역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110,000	82,5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폴리어학원』 가맹학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모든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등에 등록된 『폴리어학원』 관련 모든 정보를 삭제, 수정 또는 비활성화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 폴리어학원” 또는 “전) 폴리어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도 안됩니다. 귀하는 위 조치를 모두 완료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입차

1)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폴리어학원]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의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의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위반 시 책임	비고
교재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	상품 공급 제한 및 중지, 계약 해지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가맹학원 외에서 개인 및 그룹의 불법과외	교재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 및 프로그램은 판매할 수 없음	손해배상 부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벌 등 손해 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수강료	유치부 평균 권장가격: 700,000 원 초등부 평균 권장가격: -월수금/화목반 240,000 원 -월~금반 : 380.000 원	좌측 권장가격 기준	단, 해당지역의 교육청이 정하는 수강료 기준 엄수

4. 영업거점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치부, 초등부 중심의 영어학원	폴리어학원	해당없음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귀하와 동일한 업종의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해당 영업지역의 규모나 상황, 학원 간 거리, 대상 원생 및 교과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와의 협의 하에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엠폴리어학원(중등부 중심의 영어학원)] 및 [캔 비어학원(수강료, 입학 테스트 레벨, 프로그램 등이 폴리어학원과 다른 영어학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구(區) 단위를 원칙으로 영업거점지역 설정 (구(區)가없는 지역은 동(洞)/면(面)단위)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폴리어학원]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90 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 일 이내 동의 여부 회신)→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거점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81.7%	0.0%	18.3%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0%	100.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폴리어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계약서 제36조 제1항)

1. 영업표지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3회 이상 교재 등에 관한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 2회 이상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4. 로열티 산정을 위한 매출액 관련자료를 허위통지한 경우
5. “갑”이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운영교범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갑”이 요구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장학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장학지도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지정된 교재 및 교육컨텐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요구하는 학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노후 학원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10. 학원관리시스템(KCMS)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누락시킨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일 또는 점포 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학원 운영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13. 기타 본 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 즉시 해지 사유(계약서 제36조 제2항)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귀하는 당사가 약정한 본 계약상의 주요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즉시 해지 사유(계약서 제36조 제4항)

1. 당사가 파산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당사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 하여 가맹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학원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학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학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 부서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인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약을 원하면 당사가 검토 후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A 지역: 110,000천원(VAT 포함), B 지역: 82,500천원(VAT 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행사, 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가맹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유치부, 초등부 중심의 영어학원	국내 전 지역 및 해외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폴리어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법 및 시, 도 조례에 따름	제한 없음	문의: 학원사업부 (02-2224-7800)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교육 콘텐츠를 당사가 정한 표준 교수 일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임의대로 운영하여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담당 팀	비고
학원 청결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본사 학원사업부	-
친절도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본사 학원사업부	-
품질 관리	담당자 캠퍼스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본사 학원사업부	-
가맹본부 지침사항	담당자 캠퍼스 방문 → 지침사항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본사 학원사업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폴리어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당사가 제공한 모든 종류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종업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④ 귀하는 학원개원일 전까지 최초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고 본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가 지정된 교재나 교육콘텐츠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3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제 37 조 1 항에 따라, 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영업관련 자산의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당 (50 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타에 누설한 경우, 위약금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 제 36 조 제 2 항 제 4 호 2) 목 소정의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위약금으로 (5,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위약금으로 (5,000 만원)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0 일 내외	[441,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9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89~7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75~71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체결	D-70	55,000
가맹금 예치	- 우체국 및 하나 은행에 가맹금 예치	D-69(1 일)	220,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67~6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64(1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64~34(30 일)	166,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4(7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D-day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p>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폴리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AT포함)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 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강사 교육(개점 전)	원장, 원어민 교사 직무교육 및 캠퍼스 참관	집단강의, 개별강의	56시간	최초 가맹금에 포함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 (상반기, 하반기)	Workshop	집단강의 (전 직원 대 상)	7시간	3,267,000원(VAT포함) *교육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 (상반기, 하반기)	교육과정협의회	집단강의 (원장 대상)	7시간	과금 없음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규 서비스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입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1_2. 2024년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